

<b>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</b>				처리기간
				7월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신청학원	명칭			
	소재지			
학감 또는 부학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겸임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겸임	교통관리직 등 근무경력	
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○○지방경찰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	1.전문학원의 원칙(原則) 1부			수수료
	2.전문학원 카드 1부			50,000원
	3.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,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			
	4.부대시설 및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			
	5.주민등록증 사본(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) 1부			
	6.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(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) 각 1부			
	7.학감(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)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			
	8.전문학원의 직인, 학감(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)의 인장의 인영 각 1부			
	9.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,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			
	10.강사의 자격증 사본,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각1부			
	※제7호 내지 제10호 서류는 지정신청 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			